

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4년 9월 3일(충청북도교육감)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9월 3일
- 다. 상정일자 : 2004년 9월 16일(제3차 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교육국장 김전원)

가. 제안이유

- 제명인 “단재교육상조례”를 “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”로 하여
시상 주체를 명확히 하고, 시상부문 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는 등,
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제명인 “단재교육상조례”를 “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”로 하고,
- 시상부문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며(안 제1조 내지 제3조),
- 추천권자를 ‘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, 교육장,
고등학교장’에서 ‘직속기관장’을 추가하고(안 제4조제1항),
- 심사위원수를 “15인 이내”에서 “13인 이상 15인 이내”로 하며
(안 제5조제2항),
- 위원 자격을 “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·학예에 관하여
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”로 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
(안 제5조제3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지용옥)

○ 금번 제출된 “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”은

- 단재교육상의 시상주체를 명확히 하고, 수상대상자 추천권을 직속기관장에게도 부여하며, 심사위원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현행 규정에 없는 위원자격 조항을 신설하는 등 단재교육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○ 그러나,

- 시상부문중 학생부문을 삭제하려는 이유와 향후 학생부문의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○ 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

단재교육상조례개정조례안

단재교육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단재교육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충청북도단재교육상(이하 “교육상”이라 한다)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상부문) 교육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도부문
2. 학술부문
3. 공로부문

제3조(수상대상자) ①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사도부문 :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전·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
2. 학술부문 :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전·현직 교원, 교육전문직 및 일반인
3. 공로부문 :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(사립학교 포함) 직원, 일반인, 단체 및 기관

②수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③교육상 수상은 1회에 한한다.

제4조(수상대상자 추천) ①교육상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, 교육장,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이 추천한다.

②교육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 (별지 제1호 서식)
2. 추천조서 (별지 제2호 서식)
3. 수상대상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필요한 경우)

제5조(심사위원회 설치) ①교육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단재교육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·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,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되는 날부터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

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를 주재 한다.

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충청북도 교육청 중등인사담당이 된다.

제7조(수상후보자 심사) ①위원회에 교육상 수상후보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분과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.

③분과심사위원회를 통할하는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.

④분과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조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.

제8조(수상자의 결정) ①위원회는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부문별 2인 이내의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.

②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.

제9조(시상) ①교육상은 매년 1회 교육감이 지정하는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.

②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.

제10조(실비변상)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단재교육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 충청북도단재교육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.

【별표】

수상후보자 공적심사 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부 문	공 적 심 사 기 준
사도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한 실적 ○ 교육 발전에 기여한 실적
학술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 교육현장에 기여한 실적 ○ 학술·예술·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교육적·사회적으로 공헌한 실적
공로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 실적 ○ 교육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실적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충청북도단재교육상 추천서

○ ○ 부 문

성 명 :

생년월일 :

근 무 처 :

직 위 :

주 소 :

위 사람을 년도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수상 대상으로 추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추천권자(기관명, 직, 성명)

직(사)인

충청북도교육감 귀하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충청북도단재교육상 추천조서

○ ○ 부 문

사 진 (반명합판)

성 명 :

생년월일 :

근 무 처 :

직 위 :

주 소 :

1. 학 력

기 간	학 력	비 고

2. 경 력

기 간	경 력	비 고

3. 실적 및 공적개요

기 간	실 적 및 공 적	비 고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충청북도단재교육상 심사조서

○ ○ 부 문

심사위원

_____ (인)

_____ (인)

대상자명	근 무 처	심 사 의 견	추천순위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(조례 제명) <u>단체교육상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<u>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와</u> 타의 모범이 된 <u>학생에 대하여 단체교육상</u> (이하 “교육상”이라 한다)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시상부문)(<u>신설</u>)</p> <p>1. <u>교원 및 일반부문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가. <u>학술상</u> 나. <u>사도상</u> 다. <u>공로상</u></p> <p>2. <u>학생부문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가. <u>민학상</u> 나. <u>충효상</u> 다. <u>봉사상</u></p> <p>제3조(수상대상자) ①교육상의 수상대상자는 <u>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<u>교원 및 일반부문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가. <u>학술상 : 충청북도내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학교(이하 “각급학교”라 한다) 교직원, 교육행정기관, 교육연구기관, 교육연수·수련기관, 도서관의 직원 및 일반인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나. <u>사도상 : 충청북도내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다. <u>공로상 : 충청북도내 교육행정기관, 교육연구기관, 교육연수·수련기관,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, 일반인, 단체 및 기관</u></p> <p>2. <u>학생부문 : 충청북도내 각급학교 학생</u></p> <p>②<u>한번 교육상을 받은 자는 다시 받을 수 없다.</u></p> <p>③<u>수상대상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별지 1과 같다.</u></p>	<p>(조례 제명) <u>충청북도단체교육상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……………<u>유·초·중등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충청북도단체교육상</u> (이하 “교육상”이라 한다) 시상에 …………….</p> <p>제2조(시상부문) <u>교육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(삭제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<u>사도부문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<u>학술부문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3. <u>공로부문</u></p> <p>(삭제)</p> <p>제3조(수상대상자) ①…………… <u>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</u></p> <p>(삭제)</p> <p>1. <u>사도부문 :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전·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</u></p> <p>2. <u>학술부문 : 충청북도 유·초·중등 전·현직교원, 교육전문직 및 일반인</u></p> <p>3. <u>공로부문 :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(사립학교 포함)……………</u></p> <p>(삭제)</p> <p>②<u>수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.</u></p> <p>③<u>교육상 수상은 1회에 한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추천 및 심사) ⑤교육상 수상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.</p> <p>1. 교원 및 일반부문 : 교육장, 고등학교장, 본청국장급이상</p> <p>2. 학생부문 : 교육장, 고등학교장</p> <p>⑥교육상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매년 9월 말일까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추천서 [별지 제2호 서식]</p> <p>2. 추천조서 [별지 제3호 서식]</p> <p>3. 수상대상자의 공적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필요한 경우)</p>	<p>제4조(수상대상자 추천) ①.....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, 교육장,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이 추천한다.</p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 <p>②.....</p> <p>..... 다음 서류를.....</p> <p>1. : (..... 제1호.....)</p> <p>2. : (..... 제2호.....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심사위원회 설치) 교육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단재교육상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5조(심사위원회 설치) ①.....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심사위원회.....</p>
<p>제5조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교육상 수상대상자 추천 마감후 15인 이내로 위촉하며,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교육상 시상 종료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.</p> <p>(신설)</p> <p>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</p>	<p>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·학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위촉위원은 과반수로 한다.</p> <p>④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되는 날부터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</p> <p>⑤..... 총판한다.</p>
<p>제6조(회의 및 의사)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제1항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</p> <p>(신설)</p>	<p>제6조(위원회 운영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를 주재한다.</p> <p>②위원회..... 재적위원..... 개의하고.....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중등인사 담당이 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간사와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1인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.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.</p>	<p>(삭제)</p>
<p>제8조(추천 및 심사) ①위원회에 교육상 수상대상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과 심사부를 둔다. ②분과 심사부의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. ③분과 심사부에 심사부장을 두되 당해 심사위원이 호선한다. ④심사부장은 심사부를 통할한다.</p>	<p>제7조(수상후보자 심사) ①.....수상후보자.....분과심사위원회를..... ② 분과심사위원회..... ③.....심사위원회를 통할하는..... ④분과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조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.</p>
<p>제8조의 2(수상후보자 선정) ①각 심사부에서는 각 상별로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2인 이내로 선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조서를 작성 위원회에 회부한다. ②위원회는 제1항의 수상후보자를 12인 이내로 선정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다.</p>	<p>(삭제)</p>
<p>제9조(수상자의 결정) 수상자는 부문별 분과 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심사후 교육감이 결정한다.</p>	<p>제8조(수상자의 결정)①위원회는 수상대상자를 심사하여 부문별 2인 이내의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. ②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.</p>
<p>제10조(시상) ①교육상은 매년 1회 교육감이 지정하는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. ②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.</p>	<p>제9조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실비변상)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	개정안	
【별지 1】 수상대상자 공적심사 기준		【별표】 ··후보자 ····기준(제3조제2항 관련)	
상별	공 적 심 사	부 문	· · · · · · 심 사 기 준
학술상	○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교육에 공헌 ○ 교육에 관한 저서 간행으로 교육 현장에 공헌 ○ 교원 및 일반직, 교육전문직으로서 교육의 분야에서 학술 또는 예술 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사회적 공헌	사도부문	○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한 실적 ○ 교육 발전에 기여한 실적 (삭제)
사도상	○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, 타 교원의 귀감이 됨 (신설)	학술부문	○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 교육현장에 기여한 실적 ○ 학술·예술·문화활동 및 저서 간행으로 교육적·사회적으로 공헌한 실적
공로상	○ 충청북도내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공헌이 현저 (신설)	공로부문	○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원 실적 ○ 교육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실적
면학상	○ 면학에 힘써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 ○ 예·체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 ○ 과학, 기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	(삭제)	(삭제)
충효상	○ 투철한 애국심 ○ 효행이 지극 ○ 반공의 생활화	(삭제)	(삭제)
봉사상	○ 협동, 봉사, 준법, 선행	(삭제)	(삭제)

